
제2차 전국위원회

2024년 10월 26일(토)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순서

11:00 – 12:30 제2차 전국위원회 회의

13:00 – 14:00 플래카드 디자인 교육

회의 및 자료집 순서

모두발언

성원보고

개회선언

서기, 진행요원 지정

회순통과

안건 사항

[안건 1] 당헌 개정안

[안건 2] 초대 대표단 사업계획안

보고 사항

보고 1. 사민당 정책연구소 설립의 건

보고 2. 2024년 정당 정책 연구 용역 발주의 건

보고 3. 청년위원회(준) 준비의 건

별첨

별첨 1. 당헌 개정안

별첨 2. 초대 대표단 사업계획안

참고자료

회의규칙



전국위원 명단

구분	명단
당대표	한창민
부대표	임명희 정혜연
당 소속 국회의원	(한창민)
광역 시도당위원장 (*지역 가나다순)	(임명희) 송치용 김진호 (최혜선) (정혜연) 박형규
권역	전국위원
강원(2)	김덕기 조영진
경기인천(3)	김창희 서정범 최재혁
대전충청세종(3)	목진오 이훈 최혜선
서울(3)	송성준 이병은 고석군
영남(2)	국민수 최영규
호남제주(2)	박봉리 이수현
지명직 전국위원(2)	강점석 박환수
합계	23명

안건 사항

[안건 1] 당헌 개정안 당원총투표 상정의 건

[안건 2] 초대 대표단 사업계획안

보고 사항

보고 1. 사민당 정책연구소 설립의 건

보고 2. 2024년 정당 정책 연구 용역 발주의 건

보고 3. 청년위원회(준) 준비의 건

[안건 1] 당헌 개정안 당원총투표 상정의 건

[주문사항] 당헌에 의거, 제출된 당헌 개정안을 당원총투표 안건으로 발의해주십시오

1. 관련규정

[당헌]

제4장 대의기구

제9조(전국위원회)

① (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

제3장 당원총투표

제8조(당원총투표)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총투표를 실시한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등 당의 진로
2. 강령 및 당헌의 제·개정
3. ...

2. 당헌 개정안 당원총투표 상정의 건

1) 취지

- 창당이 완료된 바 창준위 단계에서 만들어진 현 당헌을 재정비하고, 이후 당원총투표로 통과된 개정 당헌에 따라 당규 제정을 진행하고자 함.

2) 경과

- 2024. 8. 2. 당헌당규 개정제정TF(위원장 송치용)를 구성함.
- 당헌당규 개정제정 TF에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당헌 개정안>을 마련함.
- 당헌개정 원칙 : 1. 시민당의 운영원칙 구현 2. 창당 초기 특성 반영 3. 유사정당, 해외정당과의 비교를 통한 보편적 정당운영 원칙 구현 4. 당헌 당규 사항 구분 및 당헌 내 충돌 내용 교정.
- 제출된 <당헌 개정안>을 시도당연석회의(2024. 9. 12.)와 전국위원회 간담회(2024. 9. 29.)를 거쳐 검토함.

3) 당헌 개정안

- 회의자료 <별첨 1.>로 올림.
- 당원총투표는 연내 실시하도록 하며 구체적 일정은 대표단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

[안건 2] 1기 대표단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

[주문사항] 당헌에 의거, 1기 대표단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1. 관련규정

[당헌]

제4장 대의기구

제9조(전국위원회)

③ (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

10. 대표단회의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1. 당의 정책 및 사업 등 주요한 결정

12.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2. 1기 대표단 사업계획안

1) 취지

- 창당 초기, 초대 대표단이라는 특성에 맞게 2025년 사업계획이 아닌 사회민주당 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1기 대표단 사업계획안>을 상정함.

2)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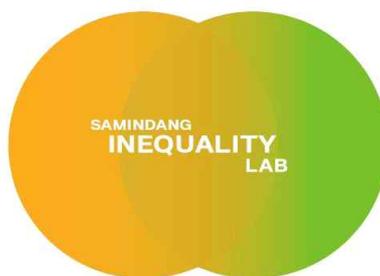
- <초대 대표단 사업계획안>를 전국위원회 간담회(2024. 9. 29.)를 거쳐 검토함.

3) 1기 대표단 사업계획안

- 회의자료 <별첨 2.>로 올림.
- 2025년 예산안은 12월 전국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예결위원장 의견 반영).

(※ 참고 : 2024년 결산 보고는 1월 이후 개최될 전국위원회에서 진행함)

- 취지 : 정당법에 의거 사회민주당 정책연구소를 설립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이라는 사회민주당의 정체성과 강령에 의거하여 ‘불평등 연구소’를 설립함.
- 명칭 : “더 평등하게 더 자유롭게” 사회민주당 불평등연구소
- 구성
 - 연구소장 : 천호선
 - 주요 발기인 및 이사 : 이정우, 전강수, 노수현, 한창민, 김보경 등(※ 정당법상 당대표 발기인 필수. 연구소 운영 위해 사무총장 이사 참여. 연구소 이사는 당원이 아니어도 가능)
- 주요 사업
 - 한국 불평등 현황 정례 보고
 - 경제/정치 불평등 해소 정책 제안
 - 사회민주당의 정책 및 전략 제안
- 발족식 11월 예정
- 연구소 CI



사회민주당
불평등 연구소

○ 주요 내용

- 2024년 비교섭단체 정당정책연구용역을 집행함.(약 3,300만 원)
- 대표단, 비전위원회, 각 시도당위원장 의견 수렴 후 연구용역 계획 확정함.

○ 정책연구용역 리스트

1. 사민당 주요 정책 및 법안 발의 관련

- 진보정당 주요 발의 법안 분석
- 진보적 무당층(스윙보터) 분석을 통한 사민당 지지층 형성 전략
- 사회민주당 금융, 세제개혁안 정책 연구

2. 지방선거 관련

- 사민당 지선 전략 지역 선정 연구의 건(강원, 전북 등)

3. 진보정당 시스템 구축 관련

- 해외 진보정당 당원교육 사례 조사

4. 시도당 요청 연구

- 최저임금제에 따른 정부의 적정소득보존제도 도입(대전)

○ 배경 설명

- 현재 당의 직능/의제/부문별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음.
- 사회민주당 청년당원으로 구성된 자발적 모임에서 2회에 걸쳐 ‘청년모임’ 논평 발표함.
- 대표단에 청년위원회(준) 설립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제안서 제출. 시도당연석회의(2024. 10. 19.)에 청년위원회(준) 설립 내용 공유함.

○ 청년위원회(준) 목표

1. 사회민주당을 새로운 청년 진보정치의 대표 구심점으로 확립
2. 청년 활동가 발굴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청년 정치 전체 단위의 경쟁력 확보
3.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당의 존재감 및 영향력 제고

○ 청년위원회(준) 주요 사업

1. 청년 당원 조직 및 활동가 발굴

1) 사회민주당 청년위원회(준) 준비위원 모집

- 사회민주당 당원 대상 준비위원 모집으로 새로운 청년 당원 및 활동가 발굴

2) 촛불을 들었던 우리를 찾습니다(가)

- 대학 강연 등 당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중사업 : 당 비전과 한창민 의원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한 강연 개최
- 지역 청년 대표성 확보 및 강화 : 지역 청년당원 간담회 + 지역 촛불 참석 + 지역 거리 연설 등을 통해 지역 청년 활동력 제고
- 청년 마이크 : 연설대회 등 접근성 높은 행사 기획으로 당 내외부 청년들의 담론 공간 형성

2. 새로운 청년 진보정치의 대표성 확보

1) 토론회 : 윤석열 시대 청년 진보정치의 역할(가)

- 사회민주당의 가치와 방향을 보여줌과 동시에 청년/진보 단위의 인플루언서, 지식인, 단체 등과 사민당 활동가들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2) 기자회견 : 사회민주당 청년 당원 탄핵 추진 선언(가)

- 새로운 나라, 탄핵으로 시작하자(가) : 탄핵 추진 정당으로서의 대표성 확립과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사회민주당의 비전 발표

3. 온라인(사무국 소통팀과 합동 사업)

1) 사민당 우체국 시즌2

- 기존 우체국의 일방향 소통을 넘어 양방향 소통으로 커뮤니티 내 인지도 확보

2) 사민당 청년 유튜브(가)

-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맞는 숏폼,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한창민 의원 및 사민당, 사민당 청년위 활동 공유

○ 청년위원회(준) 주요 일정

일정	내용
11월 초	청년위원회 준비위원 모집
11월 초~11월 말	지역별 청년 당원 간담회
11월 말~12월 초	토론회
1월	청년 탄핵추진 선언
2월	청년위원회 정식 발족

※ 별첨 1.

<사회민주당 당헌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① 우리 당은 ‘사회민주당’이라고 한다. 약칭은 ‘사민당’으로 한다.
- ② 당명의 영문 표기는 ‘The Social Democratic Party of Korea’로 한다.

제2조(목적) 우리 당은 자유·평등·평화·기후정의를 핵심 가치로 지향하며, 시민참여 진보정당으로 국민 삶의 개선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을 혁신적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며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정착시키는 평화2국가체제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 ① 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둔다.
- ② 지역조직의 자치권과 자율적인 운영과 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

제4조(소통과 보고의 의무) 선출직 공직자와 선출직 당직자는 당원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당의 입장을 설명·보고하고 설득할 의무가 있다.

제2장 당원

제5조(당원)

-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의 강령과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 ② 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 납부 여부에 따라 주권당원과 참여당원으로 나눈다.
- ③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제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 당의 주요 정책 및 결정, 특정 사안에 대해 토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 및 공직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8. 단, 위 1, 2, 7호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원은 다음의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과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
6. 당비 납부의 의무

제7조(당비) 당비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장 당원총투표

제8조(당원총투표)

① 당원총투표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총투표를 실시한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등 당의 진로
2. 강령 및 당헌의 제·개정
3. 대표단 회의 또는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
4. 전체 당원 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
5. 기타 당헌·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③ 전국위원회가 발의한 당원 총투표 안건의 경우, 선거공고, 투표, 개표 등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발의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당원총투표의 진행절차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전국위원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 당의 대의기구로 전국위원회를 두며,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대표와 부대표
2. 시·도당 위원장
3. 당 소속 국회의원
4. 선출직 전국위원
5. 사무총장, 정책위원회의장
6. 대표단의 결정에 따라 선출직 전국위원 정수 10% 이내의 지명직 전국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
 4. 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5. 시·도당에 대한 사고당부 지정 의결
 6.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7. 강령·당헌·당규의 해석
 8. 전국위원회 직속 기관 설치 및 폐지
 9. 주요 집행기구의 장 인준
 10. 대표단 회의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1. 당의 정책 및 사업 등 주요한 결정
 12.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 ④ 전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전국위원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 ⑤ 전국위원회는 대표단 회의가 소집한다, 단, 재적 전국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
- ⑥ 전국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 ⑦ 전국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⑧ 선출직 전국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집행기구

제1절 대표단

제10조(당대표)

- ① 당은 1인의 당대표를 둔다.
- ② (지위)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 ③ (권한) 당대표의 권한의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전국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당 주요 집행기구의 장 추천
 4. 지명직 전국위원의 추천
 5. 중앙당 당직자 임면
 6. 전국위원회 주재, 당의 주요 회의 소집과 주재
 7. 전국위원회 안건 발의
 8.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

제11조(부대표)

- ① 당은 3인의 부대표를 선출하고 1인의 지명직 부대표를 둘 수 있다.
- ② (지위와 권한) 부대표는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당대표와 협의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를 보좌한다.
 2.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

제12조(대표단 회의)

- ① 대표단 회의는 당대표, 부대표, 원내대표로 구성한다.
- ② 대표단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주요 당무에 대해 협의한다.
- ③ 대표단 회의는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 당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제14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 ① 당대표와 부대표 3인은 당원투표로 선출한다.
- ② 당대표는 선출된 부대표와 협의하여 부대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 ③ 당대표의 궐위나 유고 시는 차기 당대표 선출까지 득표수 순이 앞서는 부대표가 권한을 대행한다.
- ④ 당대표와 부대표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위원장 연석회의

제15조(지위와 구성) 당무 전반에 관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위해 시·도당 연석회의와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둔다.

제16조(소집)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는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전략협의회) 당대표는 당의 운영과 진로 등 주요 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부대표와 국회의원 및 당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하여 전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절 각종 기구

제18조(사무총국)

- ① 당무의 집행을 위해 사무총국을 둔다.
- ② 사무총국의 업무는 사무총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 ③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 ④ 기타 사무총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정책위원회)

- ① 당의 정책 개발과 심의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 정책위원회 업무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 ④ 기타 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0조(교육연수원)

- ① 당원의 교육과 당 간부 양성, 시민교육 등 당 교육을 총괄하는 기구로 교육연수원을 둔다.
- ② 교육연수원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③ 기타 교육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1조(기타) 주요 당무의 원활한 추진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상설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장 지역조직

제1절 시·도당

제22조(지위와 구성)

- ① 시·도당은 해당 시·도당 당원과 지역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 ② 시·도당은 자치규약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 ③ 시·도당의 자치권을 보장하며 자율적인 운영과 활동을 위해 자치 규약을 둘 수 있다. 단, 강령과 당헌에 현저히 위배되는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해 대표단의 시정 권고할 수 있고 전국위원회는 시정을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위원회)

- ① 시·도당의 의결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시·도당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권한 및 운영 등은 자치규약에 따른다.
- ③ 시·도당위원장이 복수인 시·도당은 전국위원회 당연직 시·도당위원장 1인과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성원이 될 1인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 ①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 ③ 시·도당의 설치, 직제, 운영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방법, 임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지역위원회

제25조(지위와 구성)

- ① 시·도당 내에 기초조직으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지역위원회는 민주적인 절차와 해당 시·도당의 승인에 의해 설치한다.
- ③ 지역위원회는 자치규약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 ④ 지역위원회의 설치, 직제, 운영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방법, 임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

- ① 지역위원회는 의결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권한 및 운영 등은 자치규약에 따른다.

제7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27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전국위원회 직속 원내 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8조(역할 및 기능)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갖는다.

1. 원내대표의 선출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인준
3. 국회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선출
4.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배정
5. 원내 대책 및 원내 전략의 심의, 의결
6. 당 전국위원회의 원내 활동 방침 집행
7.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의안의 심의, 의결
8.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
9. 정당법 제33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

제8장 공직선거

제29조(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 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당원투표로 선출한다. 단,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참여당원, 국민, 지지자 등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②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역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영입인사 등 피선거권) 당의 공직후보자 피선거권과 관련해 영입인사와 참여당원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경우 시·도당 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32조(공직후보자의 인준)

- ① 모든 공직후보자는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② 전국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조(재·보궐선거후보선출) 공직후보 선출에 관련한 각종 당헌, 당규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국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전국위원회 직속 기구

제34조(예산결산위원회)

-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감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중앙당 예산결산위원장은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윤리위원회)

- ① 당원의 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대의기구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③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중앙당 윤리위원회위원장은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6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고,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한다.
- ③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시·도당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 ④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 ⑥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정책연구소

제37조(정책연구소)

-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 구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재정 및 회계

제38조(재정 구성)

- ① 당 재정은 당비, 정당보조금, 정당 후원금, 기탁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한다.
- ② 당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
 2.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
 3. 당직자, 당 소속 공직자, 보좌직원이 그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직책당비
 4. 기타 당규가 정한 당비
- ③ 직책당비 액수와 납부절차는 대표단 회의가 정한다.
- ④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9조(중앙당후원회)

- ① 당대표는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중앙당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 및 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0조(예산과 결산의 회계)

- ① 당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 ②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며,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장 중간평가제

- 제41조(중간평가제) ①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기타 당규에서 정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중간평가제를 실시한다.
- ② 중간평가제 운영, 평가 방법, 평가 대상 공직자의 범위, 평가 결과의 효력 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장 보칙

제42조(의결정족수 및 선출방법)

- ① 당의 각급 회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③ 당직과 공직후보자 선출 및 당원총투표의 경우, 투표 참가 인원이 주권당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④ 본 규정 ②항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당직자 재·보궐선거(당대표 재·보궐선거를 제외한다)에서는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투표로 선출되는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재·보궐선거는 당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

제43조(청산)

- 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전국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입기구가 청산한다.
- ②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도당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설치한 수입기구가 청산한다.
- ③ 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4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5조(동시당직선거)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선거는 동시에 진행한다. 단, 동시당직선거가 실시되는 당해의 선거 실시 이전에 지역위원회를 창당하여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6조(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또는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②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민주주의 일반 원칙) 관련한 당규의 제정 전까지는 지난 진보정당의 경험과 사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의한다.

부칙 <2000. 00. 0, 제2호>

이 당헌은 당원총투표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제1조(명칭) 우리 당은 ‘사회민주당’이라고 한다. 약칭은 ‘사민당’으로 한다.	제1조(명칭) (조항변경) ① 우리 당은 ‘사회민주당’이라고 한다. 약칭은 ‘사민당’으로 한다. <신설> ② 당명의 영문 표기는 ‘The Social Democratic Party of Korea’로 한다.	영문표기 추가 예시) 독일 사회민주당의 영문명 Soci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
제3조(조직) ① 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둔다. <u>지역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둔다.</u>	제3조(조직) ① 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둔다.	지역위원회 부분은 현행 당헌 제23조에 규정이 있으므로 중복되어 삭제함
	[신설] 제0조(소통과 보고의 의무) 선출직 공직자와 선출직 당직자는 당원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당의 입장을 설명·보고하고 설득할 의무가 있다.	
제4조(당원) ① 생략 ② 당원은 3,000원 이상의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주권당원과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참여당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당원) ② 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납부 여부에 따라 주권당원과 참여당원으로 나눈다.	최소 당비규정과 당비납부 기간에 대해 당규로 위임함
③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제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명’ 추가
제7조(여성, 청년, 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 여성, 청년, 장애인 당원의 공직, 당직 진출의	삭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당헌 제33조 제2항 및 신규 당헌 조항 신설로 당규 위임사항으로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p>확대 등을 위해 선출 정수가 1명인 당직선거를 제외한 당직선거와 모든 공직선거 당내 경선 출마 시 20%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 중 2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후보는 30%를 가산한다.</p>		<p>변경</p>
<p>제8조 (당원총투표)</p> <p>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총투표를 실시한다.</p> <p>1~2. 생략</p> <p>3.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p> <p>4. 전체 주권당원 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 또는 전국위원회 10명 이상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p>	<p>3. 대표단 회의 또는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p> <p>4. 전체 당원 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p>	<p>● 3호 개정취지 대표단 회의가 직접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도록 개정함 '안건의 처리'라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개정함</p> <p>● 4호 개정취지 - 연서명 발의 기준을 '주권'당원 3% 이상에서 참여당원을 포함한 전체 당원 3%로 개정함 - 전국위원회 10인 연서명은 본조 제3호에서 전국위 과반의 결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 고려하여 삭제</p>
<p>제4장 대의기구</p> <p>제9조(전국위원회)</p> <p>① 생략</p> <p>② (구성)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p>1~4. 생략</p>	<p>제4장 전국위원회</p> <p>제9조(지위와 구성)</p> <p>②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p> <p>[신설] 5.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p>	<p>전국위원회가 유일한 대의기구라는 점에서 개정함</p> <p>제4장 제목이 전국위원회이므로 중복된다는 점에서 개정함</p> <p>조항제목 삭제(양식 통일)</p> <p>당연직 전국위원의 추가</p>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p>5. 대표단의 결정에 따라 정수 10% 이내의 지명직 전국위원을 둘 수 있다.</p> <p>③ (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p> <p>1~9. 생략</p> <p>10. 대표단 회의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p> <p>11~12. 생략</p> <p>④ (임기) 전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⑤ (소집 및 운영) 전국위원회는 대표단 회의가 소집한다. 단, 재적 전국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 <u>전국위원회 의장은 당 대표가 맡는다.</u></p>	<p>6. 대표단의 결정에 따라 <u>선출직 전국위원</u> 정수 10% 이내의 지명직 전국위원을 둘 수 있다.</p> <p>③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p> <p>10. 대표단 회의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u>의결</u></p> <p>④ 전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u>단, 그 임기는 차기 전국위원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u></p> <p>⑤ 전국위원회는 대표단 회의가 소집한다. 단, 재적 전국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p> <p>[신설] ⑥ 전국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p> <p>[신설] ⑦ 전국위원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신설] ⑧ 선출직 전국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정수’ 의미를 분명히 하여 ‘선출직 전국위원 정수’라고 규정함</p> <p>조항제목 삭제(양식 통일)</p> <p>‘심의’는 의논만 하는 것으로 정식 의결을 할 수 없어, ‘의결’을 추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항제목 삭제 ● 선거일정 등에 따라 정확히 2년 내에 당직선거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단서를 추가함 ● 조항제목 삭제 ● 전국위원회 의장 관련 규정이 6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개정함 <p>전국위원회 의장에 대해 당헌으로 정하되, 기타 의사진행 관련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하도록 위임함</p> <p>선출직 당직자 선출에 대해 세부사항을 당규로 위임함</p>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p>제10조(당대표) ①~② 생략 ③ (권한) 당대표의 권한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p>	<p>7. 전국위원회 안건 발의 [신설] 8.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p>	<p>당대표 권한으로 전국위원회 안건 발의 권한을 추가함 제7호 신설로 인한 이동</p>
<p>제13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 당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제13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 당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u>단, 그 임기는 차기 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u></p>	<p>선거일정 등에 따라 정확히 2년 내에 당직선거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단서를 추가함</p>
<p>제14조(당대표 및 부대표의 선출) ① 당대표와 부대표 3인은 당원 총투표로 선출하되, 부대표 1인을 대표가 선출된 부대표와 협의하여 지명할 수 있다. ② 당대표의 궐위나 유고 시의 차기 당대표 선출까지 득표수 순이 앞서는 부대표가 권한을 대행한다.</p>	<p>① 당대표와 부대표 3인은 당원 투표로 선출한다. [신설] ② 당대표는 선출된 부대표와 협의하여 부대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③ 당대표의 궐위나 유고 시는 차기 당대표 선출까지 득표수 순이 앞서는 부대표가 권한을 대행한다.</p>	<p>부대표 3인은 선출하고 그외 1인은 당대표가 지명한다는 의미를 분명히하고, 의결방법으로서 ‘당원총투표’와 구별하여 ‘당원 투표’라고 정정함 조항 신설로 인한 이동</p>
<p>제2절 위원장 연석회의 제15조 당무 전반에 관한 의견</p>	<p>제15조(지위와 구성)당무 전반</p>	<p>조항 제목 추가함</p>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p>수렴 및 협의를 위해 시·도당 연석회의와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둔다.</p> <p>제16조(소집)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소집하며,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는 년 1회 이상 소집한다. 단, 필요시 당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p>	<p>에 관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위해 시·도당 연석회의와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둔다.</p> <p>제16조(소집)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는 <u>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u> 당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p>	<p>현재 사회민주당 사정에 따라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규정은 삭제하고 시·도당 연석회의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위임함</p>
	<p>[신설] 제00조 (전략협의회) 당대표는 당의 운영과 진로 등 주요 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부대표와 국회의원 및 당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하여 전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p>	<p>전략협의회 신설함</p>
<p>제3절 각종 집행기구</p>	<p>제3절 각종 <u>기구</u></p>	<p>제5장 제목이 ‘집행기구’라는 점에서 중복되는 표현이 있어 개정함</p>
	<p><신설> 제00조 (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p> <p>①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p> <p>③ 시·도당의 설치, 직제, 운영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방법, 임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시·도당 위원장의 지위와 임기에 대해 명시하고, 세부운영 사항에 대해 당규를 규정할 수 있도록 당헌에 근거를 규정함</p>
<p>제2절 지역위원회</p> <p>제23조(지위와 구성)</p> <p>① 생략</p>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p>② 지역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또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30인 이상 주권당원이 있는 지역에 두며, 민주적인 절차와 해당 시·도당의 승인에 의해 설치한다.</p> <p>③ 생략</p>	<p><u>② 지역위원회는 민주적인 절차와 해당 시·도당의 승인에 의해 설치한다.</u></p> <p>[신설] ④ 지역위원회의 설치, 직제, 운영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방법, 임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지역위원회 설치 기준에 대해 당규로 위임함</p> <p>지역위원회 설치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해 당규로 위임함</p>
<p>제7장 원내기구</p> <p>제1절 의원총회</p> <p>제25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전국위원회 직속 원내 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p> <p>제26조(역할 및 기능)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갖는다.</p> <p>1. 원내대표의 선출</p> <p>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인준</p> <p>3. 국회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선출</p> <p>4.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배정</p> <p>5. 원내 대책 및 원내 전략의</p>	<p>제1절 의원총회</p> <p>제25조(지위와 구성)</p> <p>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총회를 구성한다.</p> <p>②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결기구로서 당무위원회 방침에 따라 원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p> <p>③ 의원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제2절 원내대표</p> <p>제26조(원내대표)</p> <p>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p>	<p>사회민주당 원내 규모를 고려하여 내용을 축소하고 당규로 위임함</p>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p>심의, 의결</p> <p>6. 당 전국위원회의 원내 활동 방침 집행</p> <p>7.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의안의 심의, 의결</p> <p>8.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p> <p>9. 정당법 제33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p> <p>10. 기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p> <p>제27조(소집 및 운영)</p> <p>①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단, 원내대표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소집한다.</p> <p>② 의원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절 원내대표</p> <p>제28조(지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p> <p>제29조(권한)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p> <p>①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 회의 주재</p> <p>②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p> <p>③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p>	<p>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p> <p>②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p> <p>③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p> <p>④ 원내대표의 선출과 권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이하부터 제8장 이전 부분까지 삭제></p>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p>및 특별위원회 배정에 관한 제 청</p> <p>④ 기타 당헌·당규에 따른 권한 및 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p> <p>제30조(선출 및 임기)</p> <p>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 출하며,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 1 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 출하며, 재선출 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 다.</p> <p>③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거 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을 경우 당대표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 상의 요구로 불신임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 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이 있으면 해임된다.</p> <p>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제31조(원내부대표)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 표와 원내부대표를 둔다.</p> <p>제32조(원내대책회의)</p> <p>① 원내 예산, 입법안 등 원내 활동 전반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 회의를 둔다.</p> <p>② 원내대책회의는 당대표, 원내</p>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p>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의장을 포함하여, 당대표가 지 정하는 부대표 및 국회의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한다.</p> <p>③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 대표가 맡는다.</p>		
<p>제8장 공직선거</p> <p>제33조(각급 공직후보자 선출)</p> <p>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당원총투 표로 선출한다. 단,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참여당원, 국민, 지지자 등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 하여 선출할 수 있다.</p>	<p>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u>당원투표</u> 로 선출한다. 단, 전국위원회 결 정에 따라 참여당원, 국민, 지지자 등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 여 선출할 수 있다.</p>	<p>당원들의 의결방법으로서 ‘당원 총투표’와 선출방법으로서의 ‘당원투표’를 구별하기 위해 수정함</p>
	<p>[신설] 제00조 (재·보궐선거후 보선출) 공직후보 선출에 관련 한 각종 당헌, 당규의 해당 조항 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보궐 선거의 경우 전국위원회의 결정 으로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식 등 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공직선거 재보궐선거에 대하여 전국위원회 결정 등으로 선출방 식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규정 함</p>
<p>제39조(선거관리위원회)</p> <p>① 생략</p> <p>②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 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 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p>	<p>[신설] ② 지역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 우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고, 시·도당 선거관리위원 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한다.</p> <p>③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 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 리하고 시·도당 및 지역 선거관 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p>	<p>지역위원회 사정에 따라, 상급 선관위에서 관할하도록 규정함.</p> <p>조항 신설로 인한 이동</p>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p>③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p> <p>④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④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p> <p>⑥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조항 신설로 인한 이동</p> <p>기존 오기 수정 및 조항 신설로 인한 이동</p> <p>기존 오기 수정 및 조항 신설로 인한 이동</p>
<p>제41조(재정 구성)</p> <p>① 생략</p> <p>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p>	<p>② 당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 2.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 3. <u>당직자, 당 소속 공직자, 보좌직원이 그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직책당비</u> 4. 기타 당규가 정한 당비 	<p>직책당비와 기타 당규로 정하는 당비를 추가함</p>
	<p>[신설] 제00조(중앙당후원회)</p> <p>① 당대표는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중앙당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 및 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p>	<p>중앙당 후원회 규정을 신설함</p>
	<p>[신설] 제12장 중간평가제</p> <p>제00조 (중간평가제) ① 당</p>	<p>중간평가제 실시 근거를 당헌에 명시함</p>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p>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기타 당규에서 정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중간평가제를 실시한다.</p> <p>② 중간평가제 운영, 평가 방법, 평가 대상 공직자의 범위, 평가 결과의 효력 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제12장 보칙</p> <p>제43조(의결정족수)</p> <p>① 생략</p> <p>②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p> <p>③ 생략</p>	<p>제43조(의결정족수 및 <u>선출방법</u>)</p> <p>[신설] ④ 본 규정 ②항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당직자 재·보궐선거(당대표 재·보궐선거를 제외한다)에서는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p> <p>[신설] ⑤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투표로 선출되는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신설] ⑥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재·보궐선거는 당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p>	<p>조항 제목 수정</p> <p>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재·보궐선거의 경우 경우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고 다만 당대표의 경우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도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함</p>
<p>제45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전을 제</p>	<p>제45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전을 제</p>	<p>오기 수정</p>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p>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 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 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p>	
	<p>[신설] 제00조 (동시당직선거)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선거는 동시에 진행한다. 단, 동시당직선거가 실시되는 당해의 선거 실시 이전에 지역위원회를 창당하여 선거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전국동시당직선거에 대하여 규정함</p>
	<p>부칙 <2000. 00. 0, 제2호> 이 당헌은 당원총투표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p>	

1기 사민당 사업 목표와 과제

“여기, 사회민주당이 있습니다”

■ 정세 분석 및 전망

“독자적 진보정당의 유효성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1. 촛불혁명의 실패, 윤석열정부의 등장, 범진보 진영을 개혁적 노선으로 견인하던 진보적 대중정당 정의당 10년의 실패로 인해 다당제 및 진보정당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동의가 열어짐. 진보정당 지지층의 정치적 열망 후퇴 및 소극화 현상 발생.
2. 제3정당으로 등장한 조국혁신당이 전통적 진보 지지층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정의당을 대체하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독자적 진보정당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 가중.
3. 불평등 심화와 민생경제 악화로 인해 급진적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열망은 높아짐. 그러나 반윤석열 전선으로의 집결 요구로 인해 민주당의 중도화에 대한 비판적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층 형성이 어려운 상황.
4. 민주당 원편에 존재하는 진보정당들(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인적, 세대적, 경험적 동질성이 낮은 상황. 이로 인한 ‘신진보 연합’, ‘비민주 개혁연합’의 형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
5. 윤석열 탄핵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나 탄핵을 광장 민심이 아닌 국회가 주도해야 하는 상황. 지방선거 이전 국회 탄핵 발의 여부와 이후 전개 양상이 예측이 어려움. 민주당 원편 진보정당들의 안정적 정치 기획이 어려운 상황.

■ 목표

1. 제 1진보정당으로서의 사회민주당 인지도 향상

: 여론조사 3~4% 지지율 확보/ 대선후보급의 강력한 정치 리더십 형성

2. 당의 생존과 존속을 위한 초동 주체 형성

: 당 결속력을 강화할 정치 리더 50명 양성/ 7개 시도당 창당 / 1만 당원(주권당원

30%) 확보

■ 4대 핵심전략과 2개 기본과제

1. 4대 핵심전략

- 새로운 진보정당다운 이슈 발굴 및 정체성 강화
- 인지도와 호감도를 향상시킬 대중홍보
- 당 결속력을 강화할 핵심 활동가 양성 및 당원 정치역량 강화
-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이끄는 연합정치 견인

2. 2대 기본과제

- 당원 확대 및 지지자 확보를 위한 조직 사업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창당 초기에 맞는 당 운영 시스템 구축

■ 주요 사업

1. 새로운 진보정당다운 이슈 발굴 및 정체성 강화

- 1) 1기 사회민주당 2대 개혁과제 + 4대 국가비전 정비
 - 2대 개혁과제 : 시민의 편이 되는 정치혁명 + 불평등을 줄이는 세금혁명
 - 4대 국가비전 : 교육, 의료, 주거, 일자리 4대 국가책임제/ 모두가 풍요롭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 대응/ 국토평등을 통한 저출생과 지역소멸 해소/ 북방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평화2국가체제
- 2) 사민당다운 정책연구소 운영
 - 불평등 연구소 설립
 - 정치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된 정책 개발 집중. 예) 조세, 금융 개혁 정책
- 3) 사민당 지지층 형성 전략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집행
 - 4개 연구 분야 선정 : 1. 사민당 지지층 분석 2. 의정활동을 위한 진보 정책 발굴 3. 시민참여 정당 모델 연구 4. 지역별 정치 활동 강화
- 4) 사민당다운 주요 법안 발의
 - 기업/사학 등 세습자본주의 해소 관련 법안/ 4대 정치개혁 법안 등

2. 호감도와 인지도를 향상시킬 대중홍보

- 1) 1인 의원 리더십을 강화시킬 정치 메시지 강화

- 사회민주당다운 행보와 메시지 개발
- 소수정당다운 빠른 현안 대응으로 공보 역량 강화
- 지지층 소통 채널 구축 : <국민의 사연이 모이는 곳> 한창민 유튜브 진행 등
- 2) '진보 정통성'을 이어가는 스토리 홍보
 -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정의당보다 노회찬답게'라는 슬로건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이력 등 강조
- 3) 새진보정당으로서의 품격과 과감함을 보여주는 메시지 홍보
 - 격월 전국 플래카드 사업 확산 등
- 4) 사민당 우호 인플루언서/지식인 활용한 홍보
- 5) 전파력 높은 2030들이 활용하기 좋은 홍보 집중

3. 당 결속력을 강화할 핵심 활동가 양성 및 당원 정치역량 강화

- 1) 비전위원회 활동가 연수
 - 2024년 하반기 1기 활동가 연수를 시작으로 이후 지선 출마자 교육으로 강화
- 2) 당원 정치역량 강화 교육
 - 신진보 정치의 방향 모색을 위한 월례세미나 등
- 3) 멤버십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당원 모임 진행
 - 비지역별 당원 모임 활성화 : 직업별/ 세대별 모임

4.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이끄는 연합정치 견인

- 1) 탄핵 주도 정당 역할 강화
 -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제안'의 선도적 역할 적극 홍보
- 2) 신진보연합 형성을 위한 타 진보정당과의 연대 사업 강화
 - 정치개혁/ 경제개혁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연단체 구성
 - '기본소득 가을학교' 공동주최,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긴급토론회 공동주최,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과의 소통 정례화,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사업 등
- 3)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범진보정치 협의체' 제안 준비

5. 당원 확대 및 지지자 확보를 통한 조직/재정 사업

- 1) 당원 모집, 후원 모집 홍보 상설화
 - 당 홍보 영상, 유인물 정비 및 광고 집행 상설화
- 2) 시도당 중심 당원 가입 사업 활성화
 - 시민 설문조사와 같은 대면 접촉 사업 등 진행
- 3) 1인 의원/ 대표 중심의 정치연대와 네트워크 구축 강화

- “행보를 넓게” : 국회 일정 중심에서 벗어난 일정/행보 기획 강화 등
- 4) 사민당 비전 및 의정활동 유관성 높은 집단 타겟 연대
 - 의원실 + 지역별 사회복지 분야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

6. 창당 초기에 맞는 당 운영 시스템 구축

- 1) 창당 초기 특성 및 새로운 진보정당에 맞는 정당 운영 방침 수립- 당헌개정-당규 제정
 - 당 기초 기구 신설 : 윤리위원회 설치 등
- 2) 1인 정당다운 의원실 운영 시스템 구축
 - 조직/ 홍보/ 재정 사업 중심의 의원실 운영
- 3) 시도당 운영을 위한 기초 역량 교육
 - 시도당 담당자 통합 교육 : 미디어 활용/ 홍보디자인/ 회계기초 교육 실시
- 4) 기본적 재정 확보를 통한 중앙당 사무국 운영 안정화
 - 2025년까지 2~3인 상근 당직자 고용 목표

■ 주요 일정

추진 과제	추진 시기	추진 담당
1기 2차 전국위원회	10월 26일	대표단
시도당 사업계획안 제출	12월 중	시도당위원장
당원총투표	12월 중	사무국
2025 사민당 당원PARTY	2025년 2월 중	사무국
창당 1주년 심포지엄	2025년 2월 중	사무국 + 비전위원회
2026 지방선거 전략회의	2025년 상반기	대표단+시도당위원장

사회민주당 회의 규칙

본 규칙은 당헌이나 다른 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전국위원회를 비롯한 당의 주요 회의에 준용한다.

1. 용어 정의

- 1) '의장'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 2) '회의 참가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 개최일 현재 당권이 있고, 직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회의에 참가한 자를 의미한다.

2. 개최와 폐회

- 1) 회의는 당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재석자 1/2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재석자의 과반수 참석과 재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재석자의 수는 회의 개최일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수에서 사고자의 수를 제하여 산출한다.
- 3) 사고자의 수는 구속, 수배, 형의 집행, 업무상 해외출장, 입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자 및 당비미납 및 징계로 인해 자격이 없는 자를 포함한다. 단, 회의 개최 전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된다.
- 4) 의장은 개최 선언을 하기 전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 재석자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했음을 밝혀야 한다.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최를 선언한다.
- 5)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의장의 결정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6)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 7) 의장은 회의 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될 때 산회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 8) 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낸다.

3. 의제

- 1) 의장은 회의 안건을 5일 전까지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 의장이 비공개로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자료의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 2)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 5인 이상 또는 당권자 총수의 1%의 서명을 통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의 당일 안건 발의 또한 5인 이상의 찬성을 통해 회순 통과 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의장은 제출된 안건을 즉시 공표한다.

3) 의장단은 회의 종료 전,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4. 동의

회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정동의

(1)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발의자 외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2)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3) 번안동의, 의사진행동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2) 의사진행동의

(1)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의사진행 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2) 의사진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의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질문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토론을 시작한다.

② 토론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토론이나 수정동의 제안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표결을 시작한다.

③ 안건반려 : 의결되면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중지되며,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룬다. 안건 발의자는 차기 회의에 안건 내용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의사진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번안동의

(1) 의결이 끝난 안건을 같은 회의에서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번안동의는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긴급동의

(1)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긴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2) 긴급동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회 : 의결되면 의장은 즉시 정회를 선포한다.

② 의장불신임 : 발의되면 의장은 의장석을 떠나며, 전국위원회의 경우는 부대표 중 1인이 남은 회의를 진행한다.

(3) 긴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3.의제-2>에 해당하는 안건 발의자는 찬성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6) 일자부재의에 따라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단,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발언

- 1)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손을 들어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다. 다른 성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는 예외로 한다.
- 2) 의장은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 제안 발언은 즉시 허가해야 하며, 그 외의 발언은 취지를 물어 허가 시기를 정할 수 있다.
- 3)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발언을 시작한다.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의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질의에 응답할 때
 - (2)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 (3) 의장의 허가를 구했을 때
 - (4) 발언자는 3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특별히 3분 이상의 발언 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5) 의장이 발언이 상정된 안건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의사진행동의 또는 긴급동의를 신청하고 의제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경우, 의장의 허락 없이 발언 시간제한을 어긴 경우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6. 안건 토의

- 1)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고, 회순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하며, 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나기 전 다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 3) 안건 상정 직후 안건 발의자 중 1인이 제안 설명을 한다. 의장단이 제안한 안건의 경우 의장은 제안 설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안 설명의 내용은 문서로 제출한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설명자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 4)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의 발의자 또는 수정동의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5) 질의 후 토론하며, 질의와 토론의 종결 여부는 의장이 회의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 6)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축조심의를 한다. 단, 의장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축조심의를 할 수 있다.
- 7) 의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몇 개의 조항을 합하거나 또는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어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7. 토론 방식

- 1) 찬반토론 시 토론자 수는 찬반 각 2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2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2) 찬반토론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찬성-반대-반대-찬성
- 3) 복수 안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안-2안-3안 ... / 2안-3안 ... 1안 / 3안 ... 1안-2안

- 4)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각 의견에 대해 동수로 토론자를 정해 추가토론을 허용할 수 있다. 찬반토론자 수를 동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8. 의결

-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의 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 시스템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3) 회의 성원은 표결에 있어서 이미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 4)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포한 이후 표결이 끝날 때까지 표결 절차와 관련된 것 이외의 발언은 금지된다.
- 5) 의장은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표결방법을 정한다.
- 6) 표결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동일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표결한다.
 - (2) 동일의제에 대하여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 (3) 수정동의가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 7)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낭독한 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9. 의장단

- 1) 의장은 당대표가 맡고, 당대표가 지명한 1인의 부대표가 부의장을 맡는다. 당대표가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다득표 부대표가 의장을 맡는다.
- 2) 의장단의 판단에 따라 부의장을 전국위원 중 1인으로 지명할 수 있다.

10. 회의 결과

- 1) 당의 공식적인 대의 및 집행기구의 회의는 회의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회의 결과는 5일 이내에 당원에게 공개한다.
- 2) 의장은 개회선언 후 회의 참석자의 동의하에 수인의 서기를 지명한다. 의장은 회의록의 보관을 책임지며, 실무는 당 사무총국 및 사무처에서 한다.
- 3)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회의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회의 참가자는 회의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에게 회의결과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1. 질서

- 1) 의장은 개회선언 후 수인의 진행요원을 지명한다. 진행요원은 회의규정 준수, 질서유지, 표결 등에 있어서 의장을 보좌한다.
- 2) 의장은 회의 참가자가 회의 중에 본 당규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

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1) 주의 :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 (2) 경고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이 반복될 때,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
 - (3) 발언 취소와 사과 : 회의참가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할 때
 - (4) 퇴장 :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발언 취소와 사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회의 참가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및 폭력 등 기타 언동을 통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 3) 의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끝-